

장애인 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 운영규정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4. 01. 16.

개정 2014. 05. 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22조에 의거 설치하는 생활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1인) : 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당연직)
2. 위 원(6인) :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위촉한 장애인체육회 이사 및 체육분야 전문가
3. 간 사(1인) : 시 장애인체육회 관련사업 팀장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장애인체육회 이사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직도 자동으로 해촉 된다.

제4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위원장은 장애인체육회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해당 체육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 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상근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무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장애인체육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장애인생활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생활체육의 진흥정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4. 체육지도자의 징계에 대한 사항
5.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생활체육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생활체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등 각종 생활체육 단체와의 교류
9. 기타 장애인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제6조(분과위원회 설치)

- ① 위원회 사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회의소집 및 정족수)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한다. 다만, 장애인체육회의 요청 또는 위원 2분의 1 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의의 성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사항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8조(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장애인체육회 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 관계직원 또는 해당 부문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각 위원과 초청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01.16.)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05.08.)